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30 선고 2024가단50359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태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선민

피고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생각

담당변호사 정진건

변론 종결2024. 9. 11.

판결 선고2024. 10. 3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0분의 7 지분에 관하여,

가. 피고 B와 D 사이에 2023. 4. 14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B는 D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4. 18. 접수 제28434호로 마친
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96020000분의 24505044.5 지분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96020000분의 24505044.5 지분에 관하여

가. 피고들과 D 사이에 2023. 5. 12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들은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5. 16. 접수 제830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부동산 지분을 특정하지 않았으나, 지분을 특정한 것으로 선택한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E(합병전 주식회사 F, 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는 2019. 12. 17.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대출계약'이라고 한다).

1) 대출목적: 서귀포시 G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고 한다)

토지 및 공사비 대출

2) 대출금액: 4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

3) 대출기간: 최초 인출일로부터 3개월

4) 이자: 연 12% 고정이율, 연체이자는 연 3%를 가산한 이자율

5) 채무불이행 : 차주 등이 이 약정 및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환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

6) 차주: D, H

나.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 토지 및 신축 건물에 관하여 위탁자를 D, H, 수탁자를 주식회사 I,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2020. 2. 12.

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.

다.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매를 진행하였는데, 그 결과 대여금

182,866,900원 등 채권이 남게 되었다. 소외 회사는 2023. 4. 28.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D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.

라.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4128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위 사건은 위 법원 2023머45297호로 조정에 회부되었다. 위 법원은 2023. 10. 18. 'D은 원고에게 2023. 12. 31.까지 1억 8,000만 원을 지급하되,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때까지 미지급한 돈과 이에 대하여 2024. 1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'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(이하 '이 사건 결정'이라고 하고, 이에 기한 채권을 '이 사건 결정금채권'이라고 한다),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마. 피고 B는 2023. 4. 14. D으로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0분의 7 지분을 증여받고(이하 '1증여계약'이라고 한다), 위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23. 4. 18. 접수 제284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하 '1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.

바. 피고들은 2023. 5. 12. D으로부터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96020000분의 24505044.5 지분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96020000분의 24505044.5 지분을 증여받고(이하 '2증여계약'이라고 한다),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. 5. 16. 접수 제83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하 '2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결정금채권의 실질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1증여계약과 2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였음이 명백하므로, 이 사건 결정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무자력

앞서 든 증거들, 갑 제7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증여계약 및 2증여계약 각 체결 당시 D의 소극재산이

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.

1항 (갑3의 1)	부천시 J 임야 238.5㎡ 중 20분의 7	면적 83㎡(지분적용)×공시지가 98,100원 = 8,142,300원(갑4-2)	갑3-1, 갑4-1
2항 (갑3의 2)	서울 구로구 K 임야 923㎡ 중 296020000분의 49010089	34,690,140원(갑5)	갑3-2, 갑4-2, 갑7
3항 (갑3의 3)	서울 구로구 L 임야 4214㎡ 중 296020000분의 49010089	111,628,800원(갑5)	갑3-3, 갑4-3, 갑7
총합계	154,461,240원		

1	원고 180,000,000원	갑2
2	M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채무 310,000,000원(갑8의 1)에서 D의 잉여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102,440,955원을 회수하였으므로(갑5 배당표 참조) 이를 공제한 207,559,045원	갑8의 1, 갑5
3	N 주식회사 12,522,760원	갑8의 2
4	○ 주식회사 20,186,090원	갑8의 3
5	남부천세무서 체납금 155,962,890원	갑8의 4
6	부천시 소사구청 지방세 체납금 15,443,770원	갑8의 5
합계	591,674,555원	

다. 사행의사 및 사해행위

1)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),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).

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1, 2,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준 것이므로, 1증여계약과 2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가 되고, D의 사행의사는 추정된다.

라. 수익자 악의 추정

1)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,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).

2) 1증여계약과 2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. 피고들은 1증여계약과 2증여계약의 실질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분할된 재산의 교환이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,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, 달리 반증이 없다.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① 피고들은 구체적으로 D은 부천시 소사구 P에 관하여 2001. 7. 28. 지분 100분의 18.89, 2001. 12. 20.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전부 가져가고 별지 목록 1, 2,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D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, 그에 따라 2002. 6. 17.자로 차용증도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D이 위 토지의 매각 대금을 가져갔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, 위 차용증이 D이 가져갔다는 매각대금 상당액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.

② 피상속인인 망 Q가 사망한 후 1995. 6. 30. 상속분할 협의를 하여 별지 목록 1, 2,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상황에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며, 피고들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위 부동산의 매각일 및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2023. 4. 및 5.이 되어서야 별지 목록 1, 2,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을 증여받는다든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.

마. 소결

따라서 1증여계약과 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소유권이전등기 및 2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

판결한다.

판사김희근

별지